

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1 - 17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 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헤이스팅스자산운용(주)

2. 조치내용

가. 헤이스팅스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360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(1) 지적사항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,

- 헤이스팅스자산운용(주)은 'xx.xx.xx. ~ 'xx.x.xx. 기간 중 설정된 '○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제x호' 등 P2P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총 x개 펀드*(설정액 xxx억원)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에 증권에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하고,

* □□□□□□□□□ 관련 펀드 x개(xxx억원) : ●●●● 제x호~x호, ▮▮▮ 제x호
◇◇◇ 관련 펀드 x개(xx억원) : ◆◆◆◆ 제x호~x호

- 실제로는 펀드재산을 전액(100%) P2P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(2)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8호, 제449조(과태료)제1항제29호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항제1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22] 터.
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·제3항, [별표3]